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반대 또는 불행사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 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도한 경우 반대한다.

### II. 정관 변경

####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축소하는 정관개정안에 반대한다.
4.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5. 주주총회 소집 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 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6.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권 대리 행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자의 자격을 특정한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8.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9. 안건의 공개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안건의 주주총회 상정에 반대하며 이러한 안건의 처리 허가를 구하는 제안에 반대한다

#### 10. 안건의 상정

- ① 주주총회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고 일괄 상정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안건을 주주들에게 인기 있는 안건과 함께 묶어 통과시키려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 ②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개별 안건 전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11.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 II-2. 이사회

#### 12. 이사의 선임

- 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 회사나 이사들의 장기성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면 찬성한다.
- ② 아래의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이사회나 이사의 주요 위원회에 3/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로서의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 13. 이사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 14.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한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15.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 한다.
- ②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이사의 선임 규정을 준용하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포함)의 전직 임직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 이었던 자

- 최근 3년 이내에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3/4 미만이 있었던 경우

16.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17.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나치게 유리된 경력 및 능력 보유자는 제외한다.

18.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

19. 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20.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21.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2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3. 이사 및 경영진 보상

-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 24. 주식 연계 보상

-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⑤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매수선택권의 총 규모가 10%를 넘을 경우 반대한다
- ⑥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안에 반대한다.

#### 25. 퇴직보상

- ①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실적,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 반대한다
- ② 사외이사의 경우 퇴직혜택을 부여하는 안에 반대한다.

### II-5. 자본 구조

#### 26. 법정 자본금의 증가

- ①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찬성한다.
- ② 회사의 경영자들이 법정자본금을 증가시켜 외부의 기업인수시도를 무력화하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에 반대한다.
- ③ 법정발행 주식수보다 100%이상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명백한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④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거나 계속적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찬성한다.

#### 27.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 ①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 ②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 ③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동의한 경우
- ④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 ⑤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 28. 자본구조 변경

신주발행, 채권발행, 채무재조정 등 자본 구조의 변경은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세부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 29.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과도하게 희석시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30. 주식연계채권

- ①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및 전환은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함에 찬성한다.

#### 31.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 ②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 32. 제3자 배정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 III.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 33. 합병 및 영업양수도, 분할합병

- ① 합병 및 인수, 영업양수도,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안은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 34.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